

[별지 제5호서식] (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)

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

10cm

국 민 투 표

2cm

1cm

0.5cm

2cm

1.5cm

1cm

0.5cm

0.5cm

7.5cm

1.5cm

찬 성

반 대

0.5cm

1.5cm

1cm

0.5cm

1.5cm

2.5cm

투표관리관

0.5cm

2cm

3cm

5.5cm

선 취

2cm

- 주: 1. "질문"란은 「대한민국헌법」 제130조제1항에 따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의 경우 "헌법개정안에 대하여"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.
2. 투표용지의 인쇄 시 규격 또는 작성방법을 표시하기 위한 선·숫자 및 문자는 인쇄하지 아니하며, 기표칸을 표시하는 구분선은 다른 구분선보다 굵게 인쇄할 수 있다.
3. 투표용지의 지질은 찬성·반대가 투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한다.
4. 일련번호(No. )는 구·시·군위원회 단위로 작성하되, 시·도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시·도위원회가 정한다. 다만,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8제1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투표용지 발급기 단위로,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외투표소 단위로 작성한다.
5.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는 투표용지에는 투표용지 발송 시에 좌측상단의 여백에 "거소투표"라 표시한다.
6. 청인의 날인은 그 인영의 인쇄로써 대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인영의 규격은 「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」 제3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

정할 수 있다.

7.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"투표관리관"칸을 "사전투표관리관"칸으로, 법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「공직선거법」 제218조의18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"투표관리관"칸을 "책임위원"칸으로 작성한다.
8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인의 기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 투표용지 각 칸 또는 여백의 규격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.